	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9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19. 08. 01.		
		페이지	1/2	관리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계획에 관한 사항
2.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
3. 전공심화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전공심화과정 교육품질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 대학 교수 및 산업체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산업체 인사는 1/2 이상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9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19. 08. 01.		
		페이지	2/2	관리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